



기획재정부

# 기 획 재 정 부

수신 주식회사 솔리드엑스 귀하 (우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, 863호 (시흥동))

(경유)

제목 외국환업무등록 통지(주식회사 솔리드엑스)

1. 주식회사 솔리드엑스가 우리 부에 제출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 후 외국환거래법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제한·정지될 수 있으며, 명칭, 본점의 소재지 또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귀 사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세필증 사본 1부를 1주일 이내에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
기획재정부장관



주무관

박명호

외환제도과장

전결 2025. 11. 26.

도종록

협조자

시행 외환제도과-1267

(2025.11.26)

접수

우 30112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, 중앙동 기획재정부 (어진동)

/ <http://www.moef.go.kr>

전화번호 044-215-4758

팩스번호 044-215-8136

/ [pmh0847@korea.kr](mailto:pmh0847@korea.kr)

/ 비공개(7)